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4년 5월 31일

○ 회부일자 : 2024년 6월 3일

3. 제안사유

○ 신산업·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확대 및 변경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확대 및 변경(안 제3조)

○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7조)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신산업과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 띄어쓰기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기존 25명에서 30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을 10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재난안전실장, 과학인재국장, 투자유치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규제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위원장을 현행 행정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규제개혁에 있어 민관 협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안 제1조~7조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제1조(목적) ----- ----- -----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	띄어쓰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행정규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6. (생략)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2. ~ 5. (생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  
---

제2조(설치 및 기능)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정규제--- 위하여 -----  
-----.

1. ~ 6.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  
-----  
-. -----  
-----  
전임위원 임기-----.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  
-----  
-----  
-----.

1. ----- 해당함-  
-----  
----- 가져온  
---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 대표하고-----  
----- . <단서 삭제>

약칭표기

명확한 표현

띄어쓰기

알기 쉽게  
표현

<p><u>를 대행한다.</u></p> <p><u>&lt;신 설&gt;</u></p> <p>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u>간사는규제개혁</u> 관련 업무부서장이 된다.</p>	<p>② <u>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7조(간사) ----- ----- <u>간사는 규제개혁</u> ----- -----.</p>	<p>띄어쓰기</p>
---	---	-------------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의 전문화 경향에 따라 규제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과도한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원 구성이 늘어나면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회의 일정 조율 및 의견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규제개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